

4월 저작권법 개정 앞두고 술렁이는 문화계

개정안, 사적이용 복제, 전송권 제한 및 친고조항 폐지

출판계, '출판물 대여권 신설'에 민감

지난 1월 17일 일부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저작권법이 의원입법을 통해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전면 개정은 1987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윤원호, 정청래, 이광철 의원 측은 “현재의 저작권법이 새로운 환경에 따라가기 위해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이 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작업은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작권 질서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광위는 오는 3월 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한 차례 더 공청회를 개최한 후 4월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상반기 중 입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혼란과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출판계 관심사는 ‘대여권’…3차례 간담회 ‘별무 성과’

아직 개정안의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생업이나 영리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할 경우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 부분 폐지, 사적복제를 위한 복사권 제한, 대여권 신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역할 강화, 저작권정보센터 설치, 저작권 등록제도 정비 등 다양한 조항을 추가·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판계 입장에서는 대여권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한 문화관광부도 대여권에 대한 논란을 예상해 2004년 7월 관련단체들의 의견서를 받고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사업부 장영태 과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현행법상 음반 관련 권리자에게만 대여권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일반도서 만화 영상 등 각 부문에 도입하고, 대여권을 추가 도입할 경우 필요한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식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3차례의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도서대여점과 한국영상음반유통협회 등은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당장에 사업과 관련된 문제라서 반대하거나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적복제 및 전송권도 이해 당사자간 입장 엇갈려

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송권도 업계간의 이견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28조는 도서관간의 전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내의 지적을 수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상응하도록 일부 규정을 정비했다. 그래서 2003년 저작권법 개정 시 도입된 것이 ‘도서관 보상금 제도’다. 하지만 한 전자북업체 관계자는 “현재 전자북화된 책은 10만 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

세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행 저작권법은 도서관 등 사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전자북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전자북업체는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을 통해 ‘저작권·전송권법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 출판권의 범위를 전자책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업계의 입장을 입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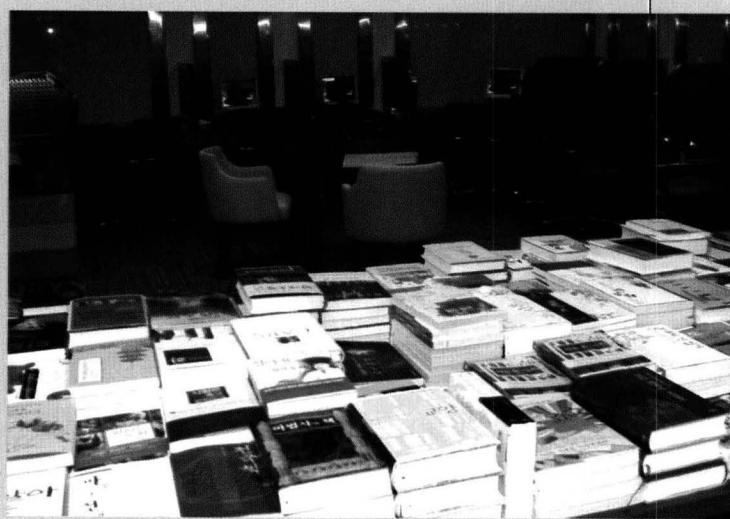
그러나 많은 출판 관련 단체들은 이번 전면 개정을 앞두고도 변변한 출판계 의견수렴조차 못 하는 등 뚜렷한 대책도 없이 그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비록 의원입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개정안 초안을 작성한 문화관광부로부터 개정안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

출판계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대여권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받았을 뿐 전면개정안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통지를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초안이 공개될 경우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대여권도 문제지만 미처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법 개정으로 출판계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사적 복제 지나친 규제, 온라인 황폐화 우려’ 지적도 개정안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행정 제 27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방송·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로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세 의원들은 개정안의 일부인 사적 복제 조항과 관련, ‘저작권법(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근 세미나를 열었다. 이광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선 성균관대 법학과 오승종 교수와 이앤컴퍼니 이병우 본부장이 각각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디지털 음악시장의 권리자 보호와 사용자를 위한 사적복제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현실을 외면한 법제정이 온라인을 황폐화하게 할 것”이라며 “법 제정에 앞서 사용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전문영 변호사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 충남대 법학과 육소영 교수,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하광훈 이사, 가수 변진섭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출판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지난 1월 17일 시행된 개정안으로 네티즌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음반 콘텐츠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출판, 게임, 영상, 음반 단속업무 일원화 방침’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년 이후로 저작권법과 관련해 많은 환경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에 발맞춰 작년 4월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거론된 ‘저작권 단속 강화’라는 대통령지시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전병우 씨는 “현재 출판, 게임, 영상, 음반 등 각 과별로 담당하고 있는 단속업무를 문화정책국 저작권과로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저작권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국회가 법개정을 맡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규제 강화를 통해 새롭게 정비되는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

취재 | 신동섭 기자